

[서식 예] 채권가압류신청서(추심금채권으로 영업보상금채권)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채 권 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시

○○시 ○○구 ○○로 ○○(우편번호 ○○○○)

시장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 및 피보전권리의 표시 추심금 채권 30,000,000원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의 존재

- 가. 신청인은 2018. 0. 0. 소외 ◎◎◎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귀원 2018가소◈◈◈ 대여금), 전부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신청인은
 ◎◎◎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지만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거부하였습니다.
- 나. 이에 신청인은 위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2012. 2. 20.경 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귀원 2018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리고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였던 채무자에게 추심청구를 하였으나, 채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며 아직까지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 등은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채권자 등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처분, 은닉, 훼손 기타 행위를 하면 채권의 강제집행이 곤란 내지 불능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채권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담보제공



채권자 등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 채권에 대한 소명자료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문서로서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 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결 론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채권자는 위 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채권가압 류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제1호증 판결문 정본

1. 소갑제2호증 송달・확정증명원

1. 소갑제3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소갑제4호증 송달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 주소지, 토지 및 건물)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채권자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30,000,000원

가압류할 채권: 제3채무자가 시행하는 나노산업단지공익사업으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서연분식집이 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연분식집의 영업권자로서 영업보상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금액.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_____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	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l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단하	경우]
	1 11	~II H 1'	0 1 1

1	보아수솟음	제기하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9
(T /	1 1'0 =	/'II/ i'	H 11/ 11/11/14/11/11/01	- :

(2)	혀재	지해삿화	뚜는	소송결과는?
(4)	1 / / 11	1'0000	<u> </u>	그 0 근 기 1 - 1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	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
	로 하여 기	가압류를 ~	신청한 /	사실이	있습니끼	-? (과거	및 현재 3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제출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채권목록 각 5부정도 첨부) 관련 법 규 조, 제278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 2008. 6. 12. [재판예규 제1229호, 시행 2008. 7. 1.] 제3조의 규정여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료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 집행절차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 2. 보증금액
 -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 ¹⁾	청구금액의 2/5 ²⁾	청구금액의 4/5 ³⁾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⁴⁾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⁴⁾ ○다만, 임금, 영업자 예금 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 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 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 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⁵⁾	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 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채권자별 구분 ⁶⁾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 ⁷⁾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 ⁸⁾	소명 정도에 따라 담 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 금공탁만을 허용	재권에 내하여노 소병 성	

- 1) 변동 없음
-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 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 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